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0 선고 2013가합532048 판결 [주식매수청구]

전 문

원고무한투자 주식회사

피고1. 주식회사 A

2. B

변론 종결 2014. 4. 25.

판결 선고 2014. 6. 20.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1,8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1.부터 2013. 6.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창업자에 대한 투자,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자금모집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는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B은 피고 A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 주식회사 프로소닉, 주식회사 이수유비케어를 조합원으로 하는 무한벤처투자조합1호(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는 2000. 5. 3. 피고 A, 피고 B과 피고 A가 발행한 주식 50,000주를 1,250,000,000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신주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조합 : 갑

피고 A: 을

피고 B: 이해관계인

제5조(주식발행 및 인수조건)

(1) 을 및 이해관계인은 이 계약 체결에 따라 액면가 5,000원 기명식보통주 50,000주를 주당발행가 25,000원으로 결의하고 갑에게 50,000주를 배정하기로 한다.

(2) 갑은 을이 배정한 위 제1항의 주식을 인수하며 당해 인수금액은 1,250,000,000원으로 한다.

제6조(사업 및 기술의 이전양도 및 겸업금지)

본 계약 체결 후 계약 당사자들은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을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 또는 보유하고 있는 기술 및 영업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사업을 지도, 조력할 수 없으며, 이해관계인은 소유하는 주식을 이전, 양도한 후에도 적어도 갑이 주식을 소유하는 동안 을이 경영하는 동일 영역의 사업을 경영할 수 없으며 경쟁회사에 종사하거나 이해관계를 가질 수 없다.

제9조(협의사항)

(1) 을은 을의 경영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갑에게 사전협의 하여야 하며, 그 사후결과를 갑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주주총회 및 이사회 안건

○ 정관의 변경, 수권자본금이나 납입자본금의 증감 및 잉여금 처분

- 주식내용 및 소유권의 변동에 관한 사항
- 경상 업무활동 이외에 소유자산의 매각, 임대, 대체, 기타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
- 새로운 사업부문으로의 진출 및 계약 체결
- 사업의 양도, 양수에 관한 계약 체결
- 중요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계약 체결
- 영업과 관련된 주요 설비 투자로서 1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 채무비율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제3자에 대한 투융자 보증행위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 포기
- 금융기관으로부터 300,000,000원 이상의 자금의 차입
- 금융기관 이외의 자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 기타 투자사업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2) 이해관계인은 이해관계인 소유 주식의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 및 자료제출)

(1)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하거나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중략)

4. 수시보고

가. 재산상 주요 변동사항

- 관련회사에 대한 투자
- 주요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나. 주주명부의 변동사항

제14조(기업공개 의무)

(1) 을은 2002년까지 을의 주식이 국내외 증권시장(증권거래소 정규시장이 아닌 장외시장의 경우 포함, 이하 같다)에 상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시기까지 미상장시에는 갑은 이해관계인에게 을의 주식을 매수청구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이 제시하는 을의 경영전반에 걸친 개선방침을 수용하여야 한다.

제16조(주식의 매수 의무)

(1) 원고 조합은 을 및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시 을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갑이 보유한 을의 주식 매수를 요구할 수 있다.

(2) 이 경우 을 및 을의 이해관계인은 갑의 매수요구 주식을 갑이 투자한 단가로 매수하여야 하며, 주식인수대금과 주금납입일로부터 매수일까지의 시중은행 대출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경우 갑이 이해관계인에게 매수통지를 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갑의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4) 이해관계인이 제1항 내지 제2항의 주식매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갑이 이해관계인에게 주식매수통지를 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는 때에는 갑과 이해관계인 사이에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주식 대금 및 경과이자를 갑에게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계약의 해지)

(3)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갑이 투자금을 완전히 회수하는 시기까지로 하되, 을의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갑이 본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을 80% 이상 매각한 경우 본 계약은 해지된다. 단 제15조 2, 3, 4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의 경우와 같이 투자로 인하여 다른 청구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1조(보증의무)

이해관계인은 연대하여 본 계약이행의 보증의무를 진다.

다. 이 사건 조합은 2000. 5. 3. 피고 A에게 위 신주인수계약에 의한 신주인수대금 1,2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이 사건 조합은 2002. 7. 22.경 해산하였고, 청산절차에서 이 사건 조합이 보유하고 있던 피고 A의 주식 50,000주 중 7,273주는 원고에게, 36,545주는 주식회사 프로소닉에게, 6,182주는

주식회사 이수유비케어에게 각 분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신주인수계약서), 갑 제2호증(통장사본), 갑 제3호증(송금영수증), 갑 제4호증(내용증명), 갑 제5호증(조합의 배분내역)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6. 6.경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 주식회사 C이라는 동종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제6조, 제9조, 제10조를 각 위반하였고, 2009. 10. 9. 및 2011. 1. 5. 기존 주주의 지분을 구주매입을 통하여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C에 이전하여 주식소유의 변동 사항이 발생하고, 피고 A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2,000,000,000원을 차입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사전에 협의하거나 사후에 통보를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제9조, 제10조를 위반하였으며, 또한 피고 A는 2002년까지 국내외 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제14조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제14조 제2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에게 원고가 보유한 피고 A의 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해산으로 피고 A의 주식 중 7,273주를 분배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식 매수대금 181,825,000원(= 7,273주 × 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 의사표시 도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2002. 7. 22.경 이 사건 조합이 해산되고 이 사건 조합이 보유하던 주식은 조합원들에게 분배됨으로써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은 효력이 상실되었거나 위 계약 제20조에 의하여 해지되었다. 또한 이 사건 조합의 해산 후 조합원이었던 주식회사 이수유비케어, 주식회사 프로소닉이 보유하던 피고 A의 주식 42,727주가 제3자에게 매각되어 인수 주식 중 80% 이상이 매각되었으므로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은 위 계약 제20조에 의하여 해지되었다.

나) 피고 A는 원고와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주주명부의 주요 변동사항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하거나 원고에게 통보를 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등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제9, 10조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고, 주식회사 C은 별도의 신설법인이 아니라 피고 A의 기존 사업부가 분사된 업체에 불과하여 위 계약 제6조를 위반하지 않았다.

다) 상법 제335조의 2 제4항, 제374조의 2 등에서는 주식매수청구의 기간을 회사의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총회의 의결일로부터 20일로 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에서 주식매수청구의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상법규정에 비추어 20일 또는 10년의 시효시간을 도과하면 권리가 소멸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위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주식매수청구를 할 수 없다.

라) 원고의 주식매수청구는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져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1) 조합의 해산에 따른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의 효력 및 계약의 해지 여부 조합재산은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나 조합이 해산되어 청산의 방법으로 조합재산을 분배하는 경우에 조합재산은 조합원에게 분할하여 귀속되는바,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에서 정한 주식매수청구의 권리는 인수 대상인 주식과 함께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어 있다가 이 사건 조합의 해산으로 위 주식을 조합원에게 분배하면서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에서 유보하고 있는 주식매수청구권도 위 주식과 함께 각 조합원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및 위 계약에서 정한 주식매수청구권의 효력이 없어진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조합의 해산에 따라 조합 재산을 분배하는 것을 주식의 매각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조합원들 사이에서 주식을 분배한 것을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제20조에서 규정하는 계약의 해지사유인 '주식의 매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을 제2호증(주식양수도사실확인 및 명의개서 요청서)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프로소닉(2010. 1.경 주식회사 에이디모터스로 상호 변경)은 2013. 1. 18. 피고 A의 주식 36,545주를 주식회사 파워인포텍에게 양도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주식매수를 청구한 2012. 7.경 이후에 발생한 사정이고, 달리 원고의 주식매수청구 이전에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제20조에서 정한 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에 따라 원고가 분배받은

주식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있다.

2) 이 사건 신주인수권계약상 의무 위반 여부 피고 A가 2002년까지 피고 A를 국내외 증권시장에 상장시키지 못한 사실, 피고 A가 2010. 7.경 및 2011. 11.경 금융기관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각 1,000,000,000원씩 차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17호증의 1 내지 4(각 재무상태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A가 2010년 및 2011년 재무상태표에 단기차입금으로 각 1,000,000,000원을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A가 단기차입금에 관하여 원고와 사전에 협의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 A는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상 제9조 및 제14조를 위반하였다(원고는 선택적으로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상 다른 의무의 위반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사유를 주장하나, 위 주장이 인정되는 이상 다른 선택적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제14조 제2항 및 제16조에 따라 피고들에게 원고가 보유한 피고 A의 주식에 관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원고의 주식매수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이 피고들에게 2012. 9. 7. 발송되어 2012. 9. 10.경 도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내용증명)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기간도과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제16조 제2항에서 이 사건 조합이 피고들에게 주식매수통지를 하면 피고들은 매수요구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고, 주식매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 사건 조합이 피고 B에게 주식매수통지를 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는 때에는 이 사건 조합과 피고 B 사이에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에서 약정한 주식매수청구권은 당사자 사이에 법률관계를 변경하는 형성권에 해당하고, 위 각 규정에서 달리 주식매수청구의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는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형성권의 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서(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44773(반소)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 A의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제14조의 의무 위반이 확실해진 2002년 말경부터 10년 이내인 2012. 9. 7. 주식매수청구를 하였으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거나 신의칙에 반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주식매수대금의 산정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제16조 제2항에서 피고들은 이 사건 조합이 매수요구하는 주식을 이 사건 조합이 투자한 단가로 매수하여야 한다고 정한 사실, 이 사건 조합이 피고 A의 주식을 1주당 25,000원에 매수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조합의 해산 당시 7,273주를 분배받은 사실은 앞서 보았는바, 원고의 주식매수청구에 의하여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하는 매수대금은 181,825,000원($= 7,273\text{주} \times 25,000\text{원}$)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1,8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의 주금납입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9.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3. 6. 7.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인규

판사김세용

판사정혜승